# 보상 및 배상규정

제정 1995.05.10 개정 2004.05.14 개정 2012.10.29 개정 2014.04.03 개정 2018.08.22

#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종업원이 회사 업무수행 중 회사가 인정한 부득이한 사고로 피의자가 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과 회사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4.05.14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종업원"이라 함은 회사 상근임원 및 직원(일용원 등 임시직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2. "업무상 재해"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,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업원의 부상, 질병, 신체장해(이하 "공상"이라 한다) 또는 사망(이하 "순직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3. (삭제) <2014.04.03>
- 4. "산재보상"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이하 "산재보험법"이라 한다)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. <개정 2014.04.03>
- 5. "유족"이라 함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- 6. "안전사고"라 함은 회사의 인원, 장비, 물자 및 설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외부인의 인적사고 및 재산피해사고를 말한다.
- 7. "배상사고"라 함은 안전사고중 법령상 또는 판례상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말한다.
- 8. "합의배상"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.

제3조(업무상재해 인정기준) ① 업무상 재해는 회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회사업무와 관련한 민원인, 시설물 등에 의한 재해
- 2. 공사업무 수행 중 대중교통수단, 공사가 제공하는 차량 및 자가운전시 발생한 재해 <개정 2014.04.03>
- 3.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<신설 2014.04.03>

4. 기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해

**제4조(보상)** ① 종업원의 공상 또는 순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른다. <개정 2014.04.03>

- 1. (삭 제) <2014.04.03>
- 2. (삭제) <2014.04.03>
- 3. (삭제) <2014.04.03>
- ② (삭제) <2014.04.03>
- **제5조(배상)** ① 배상사고는 합의배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, 공상 종업원에 대한 합의배상 은 퇴직을 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.
  - ② 제1항의 합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

### 제2장 산재보상

#### 제1절 산재보험보상 (삭 제) <2014.04.03>

- 제6조(보상의 종류 및 범위) 산재보상의 종류 및 범위는 산재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7조(휴업급여) ① 산재보상 중 휴업급여는 매월1회 회사에서 급여지급일에 선급하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수급하여 정산한다. <개정 2014.04.03>
  - ② 제1항의 선급을 행할 경우에는 수급권을 대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04.03>
- 제8조(보험급여의 청구) 종업원이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04.03>
- 제9조(산재보험법령의 적용) 본 절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재보헙법,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제2절 자체보상 (삭 제) <2014.04.03>

제10조 (삭 제) <2014.04.03>

제11조 (삭 제) <2014.04.03>

제12조 (삭 제) <2014.04.03>

#### 제3장 회사장(葬) 및 사업소장(葬)

제13조(장의 숭인) ① 회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종업원이 순직하였을 경우에는 보상 및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숭인을 받아 회사장(葬) 및 사업소장(葬)을 행할 수 있다. 단, 합의배상이 이루어진 순직자에 한한다. <개정 2014.04.03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장 및 사업소장의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해내용, 승인신청사유, 공적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04.03>

#### 제14조 (삭 제) <2014.04.03>

- **제15조(장의절차)** ① 장의 절차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4.04.03>
  - ② 제1항의 장의 절차는 유족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장의비용) 회사장 및 사업소장에 소요되는 장의비는 산재보험법에 정한 장의비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4.04.03>

#### 제4장 형사피의 보상

- 제17조(보상대상) ① 종업원이 회사업무수행에 관련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"부득이한 사고"로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가 된 경우의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.
  - ② 제1항에서의 "부득이한 사고"라 함은 종업원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사고로서 본인 또는 사고현장을 실사한 관계자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보상 및 배상심의회에서 인정한 사고를 말한다.
- 제18조(숭인신청)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피의보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.
  - 1. 사고보고서(사진포함)
  - 2. 관계자 조사보고서
  - 3.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
- 제19조(보상범위) ① 형사피의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
  - 1.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 또는 적정한 범위 내의 합의 배상금
  - 2. 구속기간중의 임금(실적급 제외)
  - 3. 벌금 및 과료
  - 4. 변호비
  - 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비용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제20조 (보상비 지급시의 구비서류)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비 지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
  - 1.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보상금 : 판결문등본 및 이에 준하는 서류
  - 2. 벌금 및 과료 : 판결문등본 또는 약식명령서등본, 법원의 납부명령서 및 기타 증빙서류
  - 3. 변호비, 합의배상금 및 제비용 : 변호사의 변호비 청구서
- 제21조 (구상권 행사) ①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보상을 시행한 후에 보상 결정 당시의 실사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제19조의 보 상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.

②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1항의 사유 이외에는 보상 및 배상심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# 제5장 배 상

- 제22조 (배상책임) 안전사고로 인하여 종업원 이외의 자가 입은 신체상, 재산상 피해는 회사측에 법령상, 판례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상한다.
- **제23조 (합의배상)**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배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배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**제24조 (배상사고처리)** ① 배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즉시 합의배상을 위한 협의를 하고 본사 배상담당부서장을 경유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합의배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
  - 1. 안전사고 발생경위
  - 2. 회사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과실내용 및 과실비율
  - 3. 피해자의 손해내용 및 손해액(과실상계 및 보험금 등 공제 후)
  - 4. 합의상대방 및 합의배상금
  - 5. 구상조치에 관한 사항
  - 6.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법률고문의 의견
  - 7.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입증자료
  - 8. 사고 관련 종업원에 대한 인사조치 사항
  - ③ 합의배상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1. 관련사고
  - 2. 합의당사자
  - 3. 합의배상금
  - 4.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의 포기
- 제25조 (배상액의 결정)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26조 (지사장의 합의배상 시행) ① 지사장이 합의배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본사에 승인 신청 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2>
  - ② 지사장이 합의배상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8.22 >
- 제27조 (배상결정의 효력) 이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제28조 (사고관계자에 대한 구상)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고관계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#### 제6장 보상 및 배상심의회

- 제29조 (구성) ① 보상 및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사에 보상 및 배상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제1항의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 - 1. 위 원 장 : 산재담당 임원<개정 2012.10.29>
  - 2. 위 원 :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(처,실장급)
  - 3. 간 사 : 산재담당 부장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<개정 2018.08.22>
- 제30조 (기능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
  - 2. 배상여부 및 배상금액
  - 3. 배상후의 구상여부 및 구상금액
  - 4. 형사피의보상에 있어서의 "부득이한 사고"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
  - 5. 사망자에 대한 회사장(葬) 및 사업소장(葬) 결정에 관한 사항
  - 6. (삭제) <2014.04.03>
  - 7. (삭 제) <2014.04.03>
  - 8. 기타 필요한 사항
  - ② 법령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.
- 제31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**제32조 (성립 및 의결)**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
  - ② 배상에 관하여 3개 이상의 의견이 분립되어 각각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가장 적은 금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많은 금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.
  - ③ 구상액에 관하여 3개 이상의 의견이 분립되어 각각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적은 금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.
- **제33조 (재심)**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배상사고의 배상액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현저한 사 정변경으로 재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가 당해 사안을 재심에 부의할 수 있다.
- **제34조 (의견진술)**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고 당사자 및 관계직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35조 (법률고문의 자문) 위원장은 배상심의에 앞서 법적 배상절차에 관하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7장 보 칙

제36조 (위임)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사규의 개정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취업규칙,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"보상규정"이란용어는이 규정에 의하여 "보상 및 배상규정"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.
- ③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당시 계류 중인 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# 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18.8.23>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